

- ⑥ 우리사주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.
-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4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장제1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) ①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
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(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
- 2.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·물품의 가액
- 3.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**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사 및 주주의 정기적인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,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의무제도를 도입하며,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를 지원하는 등 우리사주 운영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**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**

**대통령권한대행**  
**국 무 총 리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황 교 안** ㉠

**2016년 12월 27일**

**국 무 총 리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황 교 안**  
**국 무 위 원**  
**고용노동부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이 기 권**  
**장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관**

**●법률 제14499호**

**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**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1조의2(불이익 처우의 금지)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7조제2항 중 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
- 2.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

**부 칙**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,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**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**

**대통령권한대행**  
**국 무 총 리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황 교 안** 인

2016년 12월 27일

국 무 총 리      황 교 안  
국 무 위 원      이 기 권  
고용노동부 장      관

**●법률 제14500호**

**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**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
- 1.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: 1천분의 32
- 2. 2019년 이후: 1천분의 34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(이하 “각급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